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 13 선고 2022가단722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광명시 C 소재 점포에 관하여 D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E과의 임차인 지위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E에게 임차인 지위의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소외 E(피고의 아버지)의 채권자로서, 청구취지 기재 임대차계약은 E이 유일한 재산인 점포에 대하여 피고에게 임차인 명의를 신탁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E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임차인 지위를 E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를 임차인으로 표시한 임대차계약은 2016. 10. 25.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E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역시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인 2016. 10. 25.경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22. 1.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정연희